

특 허 협 력 조 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발신 : 국제조사기관

수신 :

LEE, Keon-Joo

Mihwa Bldg., 110-2, Myongryun-dong 4-ga, Chongro-gu, Seoul 110-524, Republic of Korea

PCT

PLA
312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조사보고서
부작성 선언서 송부 통지서

(PCT 규칙 44.1)

출원인 또는 대리인 서류참조기호 P11653-PCT	발송일 (일/월/년) 12 FEBRUARY 2004 (12.02.2004)
국제출원번호 PCT/KR2003/002530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아래 1. 및 4. 참조 국제출원일 (일/월/년) 21 NOVEMBER 2003 (21.11.2003)
출원인 SAMSUNG ELECTRONICS CO., LTD. et al	

1. 국제보고서가 작성되어 이를 송부함을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및 설명서의 제출:
 희망하는 경우 출원인은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조약규칙 46):
 기간 보정서 제출기간은 통상 국제조사보고서 송부일로부터 2월.

제출처 The international Bureau of WIPO
 34, chemin des Colombettes
 1211 Geneva 20, Switzerland
 Facsimile No. : (41-22) 740 14 35

보다 자세한 지침에 대하여는 첨부되는 용지에 기재된 설명을 참조.

2.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아니할 것이며 조약 제17조(2)(a)의 규정에 의한 선언서가 송부됨을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3. 조약규칙 40.2의 규정에 의한 추가수수료 납부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출원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의 지정관청에의 송부 신청서와 함께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였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출원인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4. 주의사항

우선일부터 18월 직후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을 공개합니다. 공개를 하지 않거나 또는 연기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국제공개의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각각의 경우에 따라 조약 규칙 90bis.1 및 90bis.3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 취하서 또는 우선권주장 취하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부 지정관청에 대하여는 출원인이 우선일부터 30월까지 (일부관청에 대하여는 더 늦을 수도 있음) 국내단계의 개시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9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20월 이내에 당해 지정관청에 대한 국내단계의 개시를 위한 규정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른 지정관청에 대하여는, 우선일부터 19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30월(또는 더 늦을 수도 있음)의 기간이 적용될 것입니다.

서식 PCT/IB/301의 부속서류를 참조하기 바라며, 각 특허청마다의 적용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PCT출원인 안내 제2권 국내단계 및 WIPO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02-701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팩스 번호 82-42-472-7140

특허청장

전화번호 82-42-481-5762

